

- | | |
|--|--|
| <p>□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구감소지역 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3억원 이하 ②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(접경지역 제외), 광역시(군 제외), 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③ 동일 시·군·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- (신설) ○ 취득세 25% ※ 조례로 25% 추가 가능 | <p>□ 감면 확대 및 감면한도 신설 등 (법§75-5, 영§35-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원지역 확대) <u>비수도권 인구 감소관심지역</u>*으로 확대 ○ (취득원인 확대)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구감소지역 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12억원 이하(수도권 내 접경 지역은 3억원)</u> ②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(접경지역 제외), 광역시(군 제외), 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③ 동일 시·군·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④ <u>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 아닐 것</u> - <u>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3억원 이하</u> ② <u>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, 광역시, 특별자치시 제외 지역</u> ③ <u>동일 시·군·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</u> ④ <u>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 아닐 것</u> ○ <u>감면한도 150만원 신설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법률에 따른 감면한도 75만원</u> - <u>조례로 추가감면시 150만원</u> <p>*※ 감면대상 주택 취득가액을 상향하며 한도 신설</p> |
|--|--|